제일온누리여행보험 보통보험 약관

제일온누리여행보험 약관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회사는 피보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은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전단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숭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숭낙한 때에는 보험중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숭낙 또는 거절의 알림이 없으면 숭낙된 것으로 봅니다.

제2조 [계약의 효력]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이 약관이 정한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이하 제1회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 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 임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 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1. 제13조(가입자의 고지외무)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 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2. 제13조(가입자의 고지의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顧明)하는 경우
- ④ 계약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⑤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로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3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 등"이라 합니다)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영업국, 영업소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서류, 사진, 도화 등 모든 안 내자료 포함)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 니다.

제4조 【계약 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①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드리며,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1항의 반환기일의 다음날로 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 대출이율로, 회사가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5조 [약관교부 및 중요한 내용의 설명의무]

- ① 회사는 계약을 채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② 계약자가 청약시까지 약관의 전달 및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청약일로부터 3개 월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 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 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6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합니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익자를 제9조(보험금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동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7조 【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있는 곳이 확실하지 아니한 경 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

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 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8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료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 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제9조 [보험금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 정한 보험금 (별표1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 다.

- 1. 신바람여행자금 지급일에 살아 있을 때
- 2. 신바람해외여행자금 지급일에 살아 있을 때
- 3. 보험기간 중 별표3(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 (이하 "재해"라 합니다)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 였을 때
- 4.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 하였을 때
- 5. 계약일 이후 피보험자가 60세되는 계약해당일 이전에 재해로 인하여 별표4에서 정하는 "장해동급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합니다)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이하 "장해(障害)"라합니다)상태가 되었을 때

- ②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제 1급, 제2급 또는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 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④ 제1항 제5호 및 제2항의 경우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장해진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 ⑤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계약일 이후 피보험자가 60 세되는 계약해당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의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만을 드립니다.
- ⑥ 제5항에 규정한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장해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금을 감한 차액을 드립니다.
- ⑦ 제5항에 있어서 그 재해 전에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신체의 동일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장해의상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해당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장해급여금이 지급된것으로 보고 제6항의 후단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1. 이 보험의 책임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 2. 제1호 이외에 이 보험의 규정에 외하여 장해급여 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장해급여금 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 ®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항 제4호, 제5호 또는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10조 [배당금의 지급]

- ① 회사는 사업방법서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금리 차보장금으로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 배당준비금 적립 및 배당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드립니다.

제11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등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남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 3. 계약자가 고외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 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 음과 같이 합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자급하지 아니한 보험금 등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2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괴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리며 보험료의 남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가입자의 고지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고지의무"라 합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외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1항 고지외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여부 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합니다.

-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 부터 1개월이상 지났 거나 또는 책임 개시일로 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 우에는 1년)이상 지났을 때
-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 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 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 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 4.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승낙거 절 직업 또는 직종은 제외)
- 5. 모집인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사 항을 입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 ③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 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이미 지급한 신바 람여행자금을 공제한 잔액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중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가입한도액으로 감액하며, 그 초과가입액에 대한 보험료는 돌려드립니다.
- ⑤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 유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

에는 해당보험금을 드립니다.

.

제14조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예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보험료의 납입]

① 제2회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간 중 계약자가 납입 기일까지 납입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가 발행한 영수 증율 받아야 합니다. 단, 금융기관(우체국포함)을 통하 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 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 합니다.

②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문서로 보험료의 납입방법,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제16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9조(보험금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 야 합니다.

제17조 [주소변경 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8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① 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입유예기 간(이하 "유예기간(潛豫期間)" 이라 합니다)으로하며,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치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이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수급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약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유예기간이 끝나기 10일 이전까지 제1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제19조 [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 ① 계약이 효력상실(效力喪失)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효력상실일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復活)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 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 에 8.5%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 숭낙거절시의 보험료반 환 및 고지의무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3항, 제2 조(계약의 효력), 재4조(계약불성립시외 보험료의 반 환) 및 제13조(가입자의 고지의무)의 규정을 준용합니 다.

제20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 힘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 (회사 양식)
- 2. 사고 증명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 3. 보험증권
- 4. 주민등록증 제시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 감증명서)
- 5.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보험료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외원 또는 이와 동 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 다.

제21조 [보험금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20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1항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망보험금, 장해급여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접수후 10일 이내에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13조(가입자의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등에 대한 회사의 조 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 ④ 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별표2 "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 ⑤ 회사는 신바람여행자금 또는 신바람해외여행자금 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 ⑥ 신바람여행자금, 신바람해외여행자금 및 해약환급 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울+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22조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9조(보험금 지급

사유)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망보험금 [제9조(보험금 지급사유)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로 인한 장해급여금을 포함합니다]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1조(보험금 등의 지급) 규정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 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 다.

제23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背書)하여 드립니다.

- 1. 보험종목
- 2. 보험 가입 금액
- 3. 계약자 또는 수익자
- 4.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 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1조(보험금 등의 지급)제4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 ④ 계약자가 제1항 제3호 중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

- 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변경은 계약자가 사망, 파산, 이민 또는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제24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계약자는 괴보험자가 60세되는 계약해당일 전에 언제 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 환급금을 드립니다.

제25조 [약관대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 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화수합니다.
- ③ 회사가 약관대출이자의 납입지연 등을 이유로 약 관대출 대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10 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6조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회 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 호 및 주소
- 2. 계약일, 보험종목
- 3. 보험가입금액, 보험금과 자종 급부금의 금액 및 지급사유

제27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28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보험감독원장에게 그 조정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 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보험보증기금의 지급보장]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는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험보증기금이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31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 릅니다.

(] 巫[)

보험금 지급기준표

1. 신바람여행자금 (약관 제9조 제1항 제1호)

(1 종)

지급사유	계약일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신바람	매년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0%를 90세
여행자금	까지 지급

(2종)

지급사유	계약일 이후 메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60세 미만	매년 계약보험가입금액의 5% 를 59세 까지 지급	
신바람 여행자금	60세 ~ 69세	계약보험가입금액의 5%에 매년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 씩 증액한 금액을 60세부터 69세까지 지급	
	70세 이후	매년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5% 를 90세까지 지급	

(3종)

지급사유	보험료 납입기간이 끝나는 날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신바람 여행자금			
	보험료납입 기간경과후 10년 이후	매년 계약보험가입금액의 20% 를 90세까지 지급	

2. 신바람해외여행자금 (약관 제9조 제1항 제2호)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각각 다음 연령의 계약 해당 일에 살아 있을 때
신바람 해 외 여행자금	60세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20% 70세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30% 80세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50% 90세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200%

3. 사망보험금 (약관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약관 제9조 제1항 제3호)			
	계약일 로부터	일시납	계약보험가입금액의 200%	
	도구터 2년 미만 사망시	단기납	계약보험가입금액의 전액	
사 망 보험금	계약일로부터 2년이후 60세 계약해당일 미만 사망시		계약보험가입금액의 200%	
	피보험 60세 7 일 이 ^호 계약해 미만 /	계약해당 후 90세 당일	계약보험가입금액의 전액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약관 제9조 제1항 제4호)			
사 망	계약일 이후 피보험자연령 60세 계약해당 일미만 사망시	계약보험가입금액의 500%		
보험금	피보험자연령 60세 계약해당 일 이후 90세 계약해당일 미만 사망시	계약보험가입금액의 전액		

4. 장해급여금 (약관 제9조 제1항 제5호)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60세 계약해당일 이전에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 해 급여금	제 1 급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00%제 2 급 :계약보험가입금액의 70%제 3 급 :계약보험가입금액의 50%제 4 급 :계약보험가입금액의 30%제 5 급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5%제 6 급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0%

(별표2)

해약환급금 예시표

기준 ____ 피보혐자 연령 : 40세, 월납 기준 ____ 계약보험가입금액 : 100만원

(1 종 - 일시납)

단위 : 원

경 과	남	자	여	자
기 간	납입보험료	헤약환급금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I개월 6개월년 1 3 5 10년년 15년년 20년 30년	1,578,520 1,578,520 1,578,520 1,578,520 1,578,520 1,578,520 1,578,520 1,578,520 1,578,520 1,578,520 1,578,520	1,488,970 1,531,900 1,483,420 1,489,530 1,495,610 1,509,300 1,516,000 1,303,740 1,192,040	1,558,180 1,558,180 1,558,180 1,558,180 1,558,180 1,558,180 1,558,180 1,558,180 1,558,180 1,558,180	1,469,550 1,513,070 1,465,290 1,474,910 1,485,670 1,517,630 1,557,640 1,408,360 1,310,740

(1 종 - 5년납)

경 과	님	자	여	자
기 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1개월월년년년년년년 6개월월년년년년년년 3 5 10년년년년년 20년년	33,040 198,240 396,480 1,189,440 1,982,400 1,982,400 1,982,400 1,982,400 1,982,400 1,982,400	0 147,390 229,790 817,670 1,495,610 1,509,300 1,516,000 1,303,740 1,192,040 만 기	32,530 195,180 390,360 1,171,080 1,951,800 1,951,800 1,951,800 1,951,800 1,951,800 1,951,800	146,480 227,950 812,320 1,485,670 1,517,630 1,557,640 1,408,360 1,310,740

(1 종 - 10년납)

다	റി	위

경 과	남	지	여	자
기 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1개월 6개월 1 년년 1 년년 10 년년 15 15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9,730 118,380 236,760 710,280 1,183,800 2,367,600 2,367,600 2,367,600 2,367,600 2,367,600	0 71,310 77,610 324,080 610,610 1,509,300 1,516,000 1,303,740 1,192,040 만 기	19,290 115,740 231,480 694,440 1,157,400 2,314,800 2,314,800 2,314,800 2,314,800 2,314,800	0 70,920 76,850 323,900 613,840 1,517,630 1,557,640 1,408,360 1,310,740 만 기

(1 종 - 15년납)

단위 : 원

경 과	남	자	여	자
기 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급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1개월 6개월 1 년 3 년 10 년 15 년 20 년 30 년 50 년	15,590 93,540 187,080 561,240 935,400 1,870,800 2,806,200 2,806,200 2,806,200 2,806,200 2,806,200	0 48,110 31,220 173,330 337,550 824,500 1,516,000 1,303,740 1,192,040 단 기	15,110 90,660 181,320 543,960 906,600 1,813,200 2,719,800 2,719,800 2,719,800 2,719,800	0 47,620 30,240 172,960 341,640 846,070 1,557,640 1,408,360 1,310,740 만 기

(2 종 - 일시납)

단위 : 원

경 과	남	자	여	자
기 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1개월 6개월 1 년년 3 년년 15 년년 20 년년 30 년	1,101,400 1,101,400 1,101,400 1,101,400 1,101,400 1,101,400 1,101,400 1,101,400 1,101,400	1,027,900 1,055,670 1,038,990 1,074,890 1,114,810 1,235,380 1,395,030 1,405,840 1,433,040 만 기	1,079,900 1,079,900 1,079,900 1,079,900 1,079,900 1,079,900 1,079,900 1,079,900 1,079,900 1,079,900	1,007,470 1,036,290 1,020,880 1,063,180 1,111,460 1,263,530 1,475,940 1,572,460 1,627,420 만 기

(2 종 - 3년납)

경 과	남	자	여	자
기 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1개월 6개월 1 년 3 년 10 년 15 년 20 년 30 년 50 년	23,010 138,060 276,120 828,360 1,380,600 1,380,600 1,380,600 1,380,600 1,380,600	90,070 165,140 607,500 1,114,810 1,235,380 1,395,030 1,405,840 1,433,040 만 기	22,530 135,180 270,360 811,080 1,351,800 1,351,800 1,351,800 1,351,800 1,351,800 1,351,800	0 89,440 163,880 604,830 1,111,460 1,263,530 1,475,940 1,572,460 1,627,420 만 기

(2 종 - 10년납)

단위 : 원

경 과	남	자	여	자
기 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1개월 6개월 1 3 5 10년년년 15 20 30 50	13,740 82,440 164,880 494,640 824,400 1,648,800 1,648,800 1,648,800 1,648,800	0 37,080 59,170 264,060 501,760 1,235,380 1,395,030 1,405,840 1,433,040 만 기	13,350 80,100 160,200 480,600 801,000 1,602,000 1,602,000 1,602,000 1,602,000	0 37,130 59,260 266,920 511,030 1,263,530 1,475,940 1,572,460 1,627,420 만 기

(2 종 - 15년납)

경 과	남	자	여	자
기 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1개월 6개월 1 3 5 10 15 10 15 10 15 10 15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860 65,160 130,320 390,960 651,600 1,303,200 1,954,800 1,954,800 1,954,800	0 21,090 27,190 160,170 313,580 763,420 1,395,030 1,405,840 1,433,040 만 기	10,470 62,820 125,640 376,920 628,200 1,256,400 1,884,600 1,884,600 1,884,600	0 21,170 27,330 163,510 324,550 803,450 1,475,940 1,572,460 1,627,420 만 기

(3 종 - 5년납)

다 오	 ા
71 -	 44

경 과	남	자	여	자
기 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1개월 6개월 1 년년년 3 5 10 15 20 30 50	35,870 215,220 430,440 1,291,320 2,152,200 2,152,200 2,152,200 2,152,200 2,152,200 2,152,200 2,152,200	0 163,550 362,090 1,247,360 2,173,640 2,356,270 2,347,750 2,024,090 1,674,050	36,920 221,520 443,040 1,329,120 2,215,200 2,215,200 2,215,200 2,215,200 2,215,200 2,215,200 2,215,200	0 171,520 378,040 1,298,240 2,261,820 2,485,400 2,528,960 2,280,290 1,944,100

(3 종 ~ 10년납)

경 과	남	자	여	자
기 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1개월 6개월 1 3 5 10 년 15 10 년 20 년 30 년	15,140 90,840 181,680 545,040 908,400 1,816,800 1,816,800 1,816,800 1,816,800	0 45,040 125,080 478,160 889,420 2,106,660 2,264,140 2,024,090 1,674,050 만 기	15,460 92,760 185,520 556,560 927,600 1,855,200 1,855,200 1,855,200 1,855,200 1,855,200	0 49,130 133,260 506,500 943,010 2,228,860 2,443,660 2,280,290 1,944,100 만 기

(3 종 - 15년납)

경 과	남	자	여	자
기 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1개월 6개월 1 3 5 10 15 10 15 10 15 10 15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begin{array}{c} 8,710 \\ 52,260 \\ 104,520 \\ 313,560 \\ 522,600 \\ 1,045,200 \\ 1,567,800 \\ 1,567,800 \\ 1,567,800 \\ 1,567,800 \\ 1,567,800 \\ \end{array}$	0 8,840 52,680 242,920 463,340 1,138,070 2,022,110 1,942,320 1,674,050 만 기	8,710 52,260 104,520 313,560 522,600 1,045,200 1,567,800 1,567,800 1,567,800 1,567,800	0 11,160 57,310 260,550 499,490 1,234,620 2,190,850 2,195,960 1,944,100 만

(별표3)

재 해 분 류 표 =========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 -3호, 1995, 1.1, 시행)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분 류 항 목

	분	류	항	.토	ı.			분	异片	건 3	Ž.
2.	운수사고 운수사고 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	거 탑	승자 클 탑		01 10 20		V	09 19 29
4.	승자 운수사고 탑승자	1에서	다친	삼륜	자동치	사량의	v	30	-	٧	39
5, 6.	운수사고 운수사고	1에서	다친 다친				V V	$\begin{array}{c} 40 \\ 50 \end{array}$			49 59
	변 탑승 ² 운수사고 승자	2에서					٧	60			
8. 9.	운수사고 기타 육	2 에 서 상 운 수	다친 · 사고	버스 (철	탑승 도사:	자 고 포	V	70 80			79 89
10. 11. 12.		우주	운수.	사고 1 오스	노사 고		V V V	90 95 98	-		94 97 99
		ଟ ^୩	æ ♂~	1 12. 1	خالب (۱۰		W		-	•	19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4.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 20 - W 49
14. 구경철경 기계의 함에 도출 15. 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 50 - W 64
16. 불의의 익수	W 65 - W 74
17.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	W 75 - W 84
18. 전류, 방사선 및 극순환 기온 및	W 85 - W 99
압력에 노출	
19. 연기, 불 및 화염에 노출	X 00 - X 09
20. 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X 10 - X 19
21.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 접촉	X 20 - X 29
22. 자연의 힘에 노출	X 30 - X 39
23. 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X 40 - X 49
노출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X 58 - X 59
소리 기다 및 8개월 8대 교단대 월대대	A 50 A 55
25. 기해	X 85 - Y 09
26. 의도 미확인 사건	Y 10 - Y 34
27. 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Y 35 - Y 36
28.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Y 40 - Y 59
약제 및 생물학 물질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Y 60 - Y 69
재난 기의 기의 기의 기의 기의 기의	W 70 W 00
30.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	Y 70 - Y 82
에 의한 부작용	Y 83 - Y 84
31.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 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1 00 - 1 04
합병중을 일으키게한 외과적 및	
기 입장이를 될 기계인 기계가 있다. 내과적 처치	
32.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종	
에 규정한 질병	
, 0 L L 0	

※ 제외사항

- -.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외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L23.3)
 -. "기타 고채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A00 ~ 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익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기타 불의의 사고"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 사고
- -. "법적 개입"중 처형 (Y35.5)

(별표4)

장 해 등 급 분 류 표 -----

등 급	신 체 장 해
제1급	1. 두눈의 시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홍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 2급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할때 2. 홍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한필 및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 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부터 7까지 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부터 7까지 중 또는 제 4급의 5부터 11까지 중에서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등 급	신 체 장 해
	6. 두귀의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제 3급	1.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최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심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 4급	1. 두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일상생활기본동작에 제한을 받을 때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다리가 영구히 5cm 이상 단촉되었을 때 7. 한다리가 영구히 5cm 이상 단촉되었을 때 9.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등 급	신	체	장	히	
	무선 무선 무선 무선 무선 무선 무선 무선	하게 되었 손의 첫째 겨 3손가택 하게 되었 발가락을 ば의 5발기 귀의 청력 게 뚜렷한	손가락 및 삭이상을 왜 완전영구 사락을 잃 울 영구히 장해를	 둘째 손 > 완전영구* 히 사용히 었을 때 잃고 다 영구히 남 	가락을 포함 히 사용하지 ·지 못하게 ·른 귀의 청
제 5 급	2. 整次的 2. 1. 1. 1. 1. 1. 1. 1. 1. 1. 1. 1. 1. 1.	팔태구테스(Set) 44 기소(구소(기자) 제 국 3 명 3 명 3 명 첫 첫 을 첫 을 첫 사 첫 을 사 등 되 첫 가 알 바 의 라이 의 라이 의 가 의 사 의 사 의 사 의 사 의 사 의 사 의 사 의 사 의 사	히관 남중 중을 2을 2을 2을 2등 보충 경기 가장 가장 사람이 막 때 및하또 장이 등을 가장 가장 기를 가장 있다. 기차이 를 가 잃었다. 기차이 를 가 잃었다.	절의 기 :	등에 뚜렷한 기능에 뚜렷 손가락을 잃 손가락 중 [잃었을 때 가락 이외의 가락 이외의 가락 원전 살,가락 관전 살,가락 완전 살,가락 완전 살,가락 완전 살,가락 완전 살,가락 완전 살,가락 왕전 살,가락 왕이 자리 사랑 사랑 왕이 자리 사랑 사랑 아이 자리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자리 사랑 사랑 사

등 급	신	체	장	डो	
	13. 코가 영구	결손되고 히 남겼台	고 그 기 ⁻ 을 때	구히 잃었 능에 뚜렷한 구히 남겼	장해를
제 6급	을 팔해다 한 다 존전손함하손 7	때 의를리는,리의영의하게의라도 의손의을의을 해당한 첫 등 됐었나 첫때첫안 었었다.첫때첫완전 이을째 등 때 등 됐다.	절등 기관을 기관을 가는	장해를 영 : 절의 대 의율 단축의 : 반점을 단축의 : 반점영 단축의 : 반점영구 소가역 왕조 등을 다 하지 : 한 한 하지	에 뚜렷한 등에 뚜렷 다었을을 때 가락을 때 가락용하지 라하지 의목 가락 이외 라하지 의목 가락 매을 라하지 의목 가락 매를 가락 매를

(장해등급분류해설) 1. "항상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고도의 치매 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수시간호"

"수시간호"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타인의 간호가 필 요한 경우
- 2) 정신장해로 인하여 자택밖의 행동이 곤란하여 수 시로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 3) 심장, 신장 또는 긴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 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 하여 혈액투석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 3.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음식물 섭취, 배변·배뇨, 거동·보행 또는 목욕 등을 하는데 있어 평생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 또는 정신 장해로 인하여 생활적응 능력이 멸어져 평생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 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5. "시력의 뚜렷한 장해"

사력이 0.06 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 나나 한국의 보장시작에 네아서 학장님/도 되어 외로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6.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말의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것"이란 다음의 경우

를 말한다.

-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해로서 구순음(ㅁ,ㅂ,ㅍ), 치설음(ㄴ, ㄷ, ㄹ),구개음(ㅈ,ㅊ),후두음(ㅇ, ㅎ) 중 3종류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
- 이 되지않는 경우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않는 경우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 3) 성대 선무를 떼어냅으로서 발음이 출가하면 성주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등)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7.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구개음, 후두음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보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그 외국이 되시 않는 경우를 할만나.
 나.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국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헬스의 경우에 청력상실
- 의 정도를 각 각 a,b,c,d 데시벨(청력검사단위)로 했을 때 1/6(a+2b+2c+d)의 값이 80데시벨(청력검사단위)이상 (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 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9. "청력의 뚜렷한 장해"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 (40cm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 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해"
- 코뼈가 결손된 경우로서 양코로 숨쉬는 것이 곤란하거나 또는 후각 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II. "팔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말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운동 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팔은 어깨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 다리는 골반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강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말 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 에도 이에 준한다.
- 12.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와 보행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동요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 13.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 가. "척추의 뚜렷한 기형"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 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나. "척추의 심한 운동장해"

-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 굽히기, 좌우 굽 히기 및 좌우 회전 운동중 2종류이상의 운동이 생 리적 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해 목뻐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 급히기, 좌우 급히기 및 좌우 회전 운동중 2종류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 라. "척추의 운동장해"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 중 2종류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 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 14. "손가락의 장해"
 - "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손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마디) 이 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손가락의 윈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첫째손 가락은 말절골(끝에서 첫째마디)의 1/2] 이상을 잃 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중수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는 경구 보는 판가락의 중구설관설(불에서 마지막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마디)[첫째손가락은 지절간 관절(끝에서 첫째마디)]이 완전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5.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의 않은 것"
- -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를 잃
 - 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첫째 발가락은 말절골(끝에서 첫째마디)의 1/2이상 그 외 발가락은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그 되 될 가락은 된 지시 할 인 인 할 (문에서 첫째 다리) 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마디) 또는 근위지절간 관절(끝에서 둘째마디) [첫째 발가락은 지절간 관절(끝에서 첫째마디)]이 완전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16. "신체의 동일부위"

- 기. 한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이하(손가락,손목이하,팔 꿈치이하,어깨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나. 한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이하(발가락,발목이하, 무룦이하,골반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 다. 눈 또는 귀의 상해에 내하여는 구는 모든 구기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라. 최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마. 장해등급분류표중 제1급의 5,6,7,8,9, 제2급의 3,4,5, 제3급의 8 또는 제4급의 12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두다리,한팔과 한다리,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휴일재해보장특약 약관

휴일재해보장특약 약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③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에 정 한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등 급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중 제1급의 장 해(이하 "제1급의 장해"라 합니다) 상태가 된 경우에 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연생보험계약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배우자, 계약자, 피보험자 등) 중 1인을 선택하여 이 특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4조("휴일"의 정의)에 정한 "휴일"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 (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보험금 (별표1"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 1.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 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 태가 되었을 때 : 휴일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
- 2.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이하 "장해"라 합니다) 상태가 되었을 때 : 휴일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

- ②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제1호의 경우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 한것으로 봅니다.
- ④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 부터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장해진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의 등급을 결정 합니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 여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 다
- ⑥ 제1항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휴일재해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의 등급에 해당하는 휴일재해장해급여금만을 드립니다.
- ⑦ 제6항에서 규정한 휴일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휴일재해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휴일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휴일재해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휴일재해장해급여금을 뺀 금액을 드립니다.
- ® 제6항에 있어서 그 재해 전에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신체의 동일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장해의상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해당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휴일재해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7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1. 이 특약의 책임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휴일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 2. 제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휴일재해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휴일재해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 ⑨ 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일재해장 해급여금의 지급한도는 통산하여 특약보험가입금액의 70%로 합니다.

제4조 【 휴일 의 정의】

이 특약에서 휴일 이라 함은 「토요일」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로 합니다.

제5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6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6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효력】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에 정한 보험료납입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특약은 더 이 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해 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7조 【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

활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8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 3. 보험증권
-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 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9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급여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드립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 ③ 이 특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 되었을 경우에 해약 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별표 "해약환급금 예시 표"참조)

④ 제3항의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10조 【특약내용의 변경】

-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 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1조【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 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12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

해약환급금 예시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 1,000 ₩/ 보험기간 : 20 년 만기 가입연령 : 40 세 납입기간 : 15년납 - 납입방법 : 월납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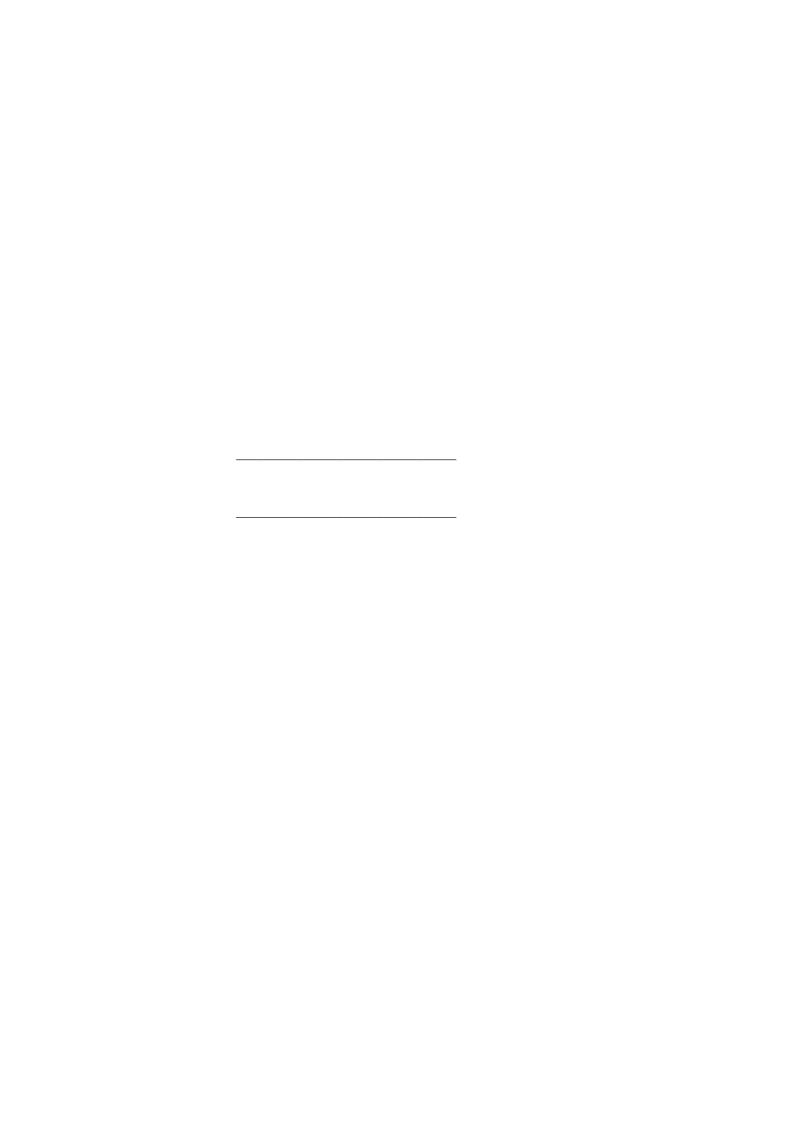
경 과	남	자	여	자
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1 년 3 년 5 년 10 년 15 년 20 년	7,200 21,600 36,000 72,000 108,000 108,000	600 2,100 3,800 9,600 18,700	2,400 7,200 12,000 24,000 36,000 36.000	300 900 1,600 3,900 7,000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급 여 명	지 급 사 유	지 급 액		
휴일재해사망 보험금 (약관 제3조제 1항 제1호)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약관 제10조(휴일의 정의)에 정한 휴일에 재해로 인하여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되었을 때	특약보험가입 금액의 전액		
	피보험자가 특약 의 보험기간 중	(기준:특약보험 가입금액)		
휴 일 재 해 장 해	약관 제10조(휴 일 의 정의)에 정한 휴일 에	장해 등급 지급액		
급여금 (약관 제3조제 1항 제2호)	재해로 인하여 제2급 내지 제6 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日 70% 3日 50% 4日日 30% 5日 15% 6日 10%		

(3) _____ 3()

(4) 4()



```
1 [
                    1
                                   가
(
    (
90
                  6 (
가
가
                 가
 2 [
                 1
    1
                 (
) 1
 3 [
          가
 1.
 2.
     15
         가 ) 2
3.
                                     1
                              (
              가
- 가
가
                             3
  1
                        1
                        1
 4 [
```

```
1
                                     (premalignant
) . , (premalignor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1
               C44
                                       (basal cell
carcinoma or squamous cell carcinoma)
           가
                              (hemic system)
   (fixed tissue)
                              가
                가
                                      가
                       1
  5 [
              가
                                         가
 1.
        가 1 (
) 2
                                     가
                             50%
                                   (1
 2.
        가 1 (
) 2
                                       가
                    2
             가
```

) 2

1 (

(WHO)

1 6 **[** 1 60 7 [1 가 1 2 8 [1 1 () 2 9 [1 , 1. 2.)

3. 4.

5.

) 기

가

1 2 3 2 가 10 【 1 9 (3 10 1 .() 3 가 11 【 1 가 가 가 가 12 【 1

1

13 []

. 가

(벌표)

기준

특약보험기입금액: 1,000만원

- 육덕모임기업등액 · 1,00 보험기간 : 20년 만기 기입연령 : 40세 납입기간 : 15년납 - 납입방법 : 월납

구분.	日本性 マックス (1)		여	
	임입보염료	해약환급금	집이토함료	히약환급임
1 년 3 년 5 년 10 년 15 년	62,400 187,200 312,000 624,000 936,000 936,000	32,000 122,600 216,000 421,000 521,400	38,400 115,200 192,000 384,000 576,000 576,000	10,100 55,700 102,706 191,400 240,300
				:

```
( 1)
                     (
                                  1993-3 ,
1995.1.1
                                   C00-C14
 1.
 2.
                                   C15-C26
                                   C30-C39
 3.
 4.
                                   C40-C41
 5.
                                   C43-C44
                                   C45-C49
 6.
 7.
                                   C50
 8.
                                   C51-C58
 9.
                                   C60-C63
10.
                                   C64-C68
11. ,
                                   C69-C72
                                   C73-C75
12.
13.
                                   C76-C80
14.
                                   C81-C96
15.
                                    C97
```

4

〈별표 2〉

장 해 등 급 분 류 표

동급	신 체 장 해
제1급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시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팔의 손목 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8. 한팔의 손목 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장해등급분류해설)

1. "항상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고도의 치매 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 2. "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 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3.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말의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것"이란 다음의 경우 를 말한다.
 -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해로서 구순음(ㅁ,ㅂ,ㅍ), 치설음(ㄴ, ㄸ, ㄹ),구개음(ㅈ,ㅊ),후두음(ㅇ, ㅎ) 중 3종류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 이 되지않는 경우
 - 2) 되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않는 경우
 - 3) 성대 전부를 뗴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등)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4. "팔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 리의 완전운동 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팔은 어깨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 다리는 골반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 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 에도 이에 준한다.



```
1 [ ]
가 , , 가
가
                        가
가
                    1
 2 [
           가
                       (
            가
                       2 1 ,
)
가
        2
            1
                 2
.(
"
1.
2.
      .)
          22
                   2
            2
                     4
가
```

. **3 【 】** 가 2(

7) (")

(~ ~ ~) (1 ~ ~) . 1 1

. ,

180 . 1 가

2 . 1

3() 가

180 1 가 가 .

.

4 []

가 ()

3 2 (가 5 **[** 1 가 가 1. 가 , 가 2. 가 3. 가 1 가 1. 2. 2 3. 가 1 6 **[** 60

1 7 **[** 가 】 (復活) 8 9 **[** 1 () 1. 2. 3. 4. () 가

1 2

3

5.

2

```
가
10 ( 9 (
        3
                            10
                        [ 5
) 2 2 ,
), 11 (
) 1 ]
    ) 2 , 12 (
                      .
가
 3
         + 1%
                 1
11 【
          가
                     가
          가
```

가 . 12 【 】 . .

13 []

. 가

(벌표)



해약환급금 예시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 1,000만원

독막모임가입금액: 1,000만
 보험기간: 20년 만기
 가입연령: 40세
 납입기간: 15년납
 납입방법: 월납
 3일초과 입원시 보장의 경우

구분	남 자		여 자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1 3 5 10 15 10 15 10 15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42,000 126,000 210,000 420,000 630,000 630,000	14,100 41,700 68,600 132,900 189,400 0	42,000 126,000 210,000 420,000 630,000 630,000	*14,700 43,700 71,800 138,500 193,800 0

(1) _____

3		1
	가	1/1000

```
(
                   )
  1.
                                 A00 - B99
                                 C00 - D48
  2.
                                 D50 - D89
  3.
                                 E00 - E90
  4.
                                 G00 - G99
  5.
  6.
                                 H00 - H59
  7.
                                 H60 - H95
                                 100 - 199
  8.
  9.
                                 J00 - J 99
 10.
                                 K00 - K93
 11.
                                 L00 - L99
 12.
                                 M00 - M99
                                 N00 - N99
 13.
 14.
                                 O00 - O99
                                 P00 - P96
 15.
```

2

1

R00 - R99

S00 - T98

V01 - Y98

2)

16.

17.

18.

(

(3) _______ 3()

4()

•

단체취급특약 약관

제 1 조 【단체취급특약의 적용범위】

- 이 단체 특별협약(이하 "단체취급특약" 이라 합니다) 은 보통보험계약(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약 용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체결할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보통보험계약에 한하여 적용합 니다.
- 1. 보통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 니다) 또는 피보험자가 다음 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 가. 제1종 단체(급여관계 단체): 단체의 소속원 이 그 단체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지급 받는 관공서, 국영기업체, 기업체 및 공장 등의 단체
 - 다. 제2종 단체(법정단체) : 제1종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조합
- 2. 단체취급특약의 적용을 받는 인원수는 동일단체 (이하 "단체"라 합니다)에 소속한 보통보험 계약 의 계약자수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계약자로 하고 단체소속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통보험계약의 피 보험자수가 5인 이상 이어야 합니다.

제2조【대표자의 선정】

대표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직책상 대표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로 합니다.

제 3 조 【보험요율의 적용】

이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단체취급 보험요율을 적용합니 다.

제 4 조 【보험료의 납입】

- ①보험료는 단체와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정한 날에 대표자가 일괄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납입보험료에 대한 영수증을 대표자에게 교

부합니다. 다만, 단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영수중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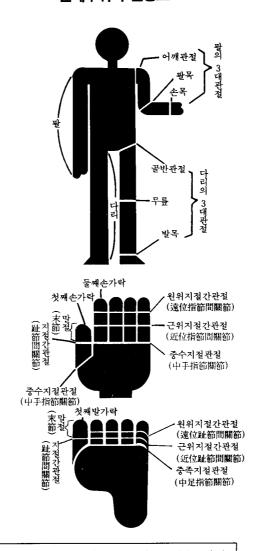
제 5 조 【단체취급특약의 소멸】

- 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 이 단체취 급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보통보험약 관의 규정을 장래에 향하여 적용합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속단체를 탈퇴 하였을 때
- 2. 보험료를 일괄하여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다만, 보험료 납입방법을 자동이체로 전환하여 보험료가 입금되었을 때는 일괄납입으로 간주합니다.
- 3. 제1조(단체취급록약의 적용범위)에 정한 단체의 보험료 납입 인원수가 5명 미만으로 되고 그 후 6 개월이 지나고도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 ②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제3호의 경우에는 단체취급 계약 전부에 대하여 이 단체취급특약은 더 이상 효력 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단체취급특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차회이후의 보험료는 보통보험계약에 의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 6 조 【보통보험 약관의 준용】

이 단체취급특약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 보험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신체부위의 설명도



* 신체부위의 설명은 장해등급 분류해설 14·15항 참조